



치매 여정별 보장 내용 및 제공서비스

플랜 보장

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 
치매·간병특화형 II

월 보험료  
5만원 이상  
가입시

깜빡깜빡 건망증

- 치매자가체크 콘텐츠 제공
- 치매관리 식단 컨설팅
- 전문의료진 1:1 건강 상담

진료 및 검사

급여 MRI, CT, PET검사      매년 **20**만원

- 증상/질병별 병원 및 의료진 안내
- 신속한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대행 서비스

경도인지장애,  
초기치매, 장기요양  
인지지원등급

인지지원등급  
재가급여

최대 월 **30**만원  
(재가급여 20만원 +  
주·야간보호 10만원)

- (경도인지장애 한정)  
뇌MRI포함 종합검진 1회 제공
- 미리미리 자산관리 컨설팅(신탁/후견 등)
- 관리·돌봄 전반 치매관리컨설팅
- [CDR 1 또는 인지지원등급 ~ LTC 5등급]  
간병인 or 가사도우미 or 재택간병인 10회

치료

레캄비 치료      최대 **2,500**만원  
급여 치매 약물      매년 **50**만원

- 병원 진료시간호사동반
- 부모, 배우자, 자녀 중 1회 치매유전자검사
- (65세↑) 종합병원 동행서비스(door to door)

치매 심화  
거동 불편

5등급↑  
재가급여

최대 월 **70**만원  
(복합재가 10만원 +  
재가급여 50만원 + 주·야간보호 10만원)

- [CDR 2 또는 LTC 3~4등급]  
간병인 or 가사도우미 or 재택간병인 5회 추가
- 가족 모두가 고통! 보호자 전화 심리상담
- (60세↑) 잘 계신지 안부콜 제공

요양원 등  
시설 입소

4등급↑  
시설급여

더 이상 집에서 관리가  
힘들때 요양원 등  
월 **60**만원

- 입소지원 상담
- 요양원 입소시 준비물 키트
- [CDR3 또는 LTC 1~2등급]  
간병인 or 가사도우미 or 재택간병인 5회 또 추가

보험료 예시

기준: 남자 50세, 종신만기, 20년납, 갱신형은 최초계약 전기월납 기준

\* 부가서비스는 80세(60세 이상은 20년)까지 제공

특약명	가입금액	보장금액	일반심사보험	간편심사보험
주계약	300 만원	300 만원	8,040 원	8,070 원
급여치매보장특약(갱신형)	1,000 만원	검사 20 약물50 만원	183 원	238 원
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특약(1/7/14회이상)(갱신형)	5,000/10,000/10,000 만원	총 2,500 만원	2,040 원	2,635 원
장기요양복합재가급여특약(1~5등급)(월1회)(저해약환급금형)	1,000 만원	10 만원	1,630 원	1,720 원
장기요양재가급여특약(1~5등급)(월1회)(복지용구포함)(저해약환급금형)	3,000 만원	30 만원	19,440 원	22,560 원
장기요양재가급여특약(1~인지지원등급)(월1회)(복지용구포함)(저해약환급금형)	2,000 만원	20 만원	13,160 원	15,640 원
장기요양주·야간보호지원금특약(1~인지지원등급)(월1회)(저해약환급금형)	1,000 만원	10 만원	1,210 원	1,340 원
장기요양시설급여특약(1~4등급)(월1회)(저해약환급금형)	6,000 만원	60 만원	9,480 원	11,280 원
합계			55,183 원	63,483 원

일반심사상품

남자 40세 보험료  
월 **45,407**원

간편심사상품

남자 40세 보험료  
월 **53,445**원

# 해약환급금 예시

기준 : 남자 40세, 주계약 가입금액 1천만원, 20년납, 종신만기, 세전

(단위: 원)

경과기간	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주계약 월 보험료 21,100			교보간편더안심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주계약 월 보험료 21,200		
	납입보험료	해약환급금	환급율	납입보험료	해약환급금	환급율
1년	253,200	-	-	254,400	-	-
3년	759,600	252,000	33.2%	763,200	256,114	33.6%
5년	1,266,000	534,250	42.2%	1,272,000	539,207	42.4%
10년	2,532,000	1,224,650	48.4%	2,544,000	1,231,550	48.4%
20년	5,064,000	5,530,900	109.2%	5,088,000	5,555,300	109.2%
30년	5,064,000	6,779,500	133.9%	5,088,000	6,804,600	133.7%
40년	5,064,000	8,063,900	159.2%	5,088,000	8,086,800	158.9%
50년	5,064,000	9,101,600	179.7%	5,088,000	9,117,400	179.2%
60년	5,064,000	9,601,200	189.6%	5,088,000	9,606,400	188.8%

※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,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(해약공제액 포함)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※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은 「일반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× 해지지급률(50%)」으로 합니다.

또한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약환급금은 「일반형 계약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」으로 합니다.

##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

-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[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]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잘못된 사항(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)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,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,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,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(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)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※ 전문금융소비자: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회사,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.
-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보험은 은행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을 해드리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-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상품은 배당이 없는 무배당 상품입니다.
-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며, 근로자가 피보험자(기본공제대상자)로 하여이 보험에 가입시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관련 세법 등 개정시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소정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,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계약의 해지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(단,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)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지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.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(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)하며,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해 드립니다.
- 보험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(www.kyobo.com) 또는 고객센터(1588-1001)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. 만일 저희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콜센터(국번없이 1332) 등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계약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은 전화, 메신저, 카카오톡,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. 전화, 메신저, 카카오톡,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또는 검찰, 경찰,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금융사기 피해관련 사항은 경찰청(112), 금융감독원(1332)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